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2019년 3월 6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1월 31일, 조상호 의원

2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7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

(2019년 3월 6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상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상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, 포상금 지급시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상금 지급액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적극적인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급기준별 포상금액의 포상금액 중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포상금액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확대함(안 별표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조상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74호로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 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 포상금의 한도액을 기존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.

[표1] [2017~2018년 포상금 지급 실적]

(단위: 원)

연도	공익제보 건수	포상금 지급 건수	본 예산 편성액	지급 결정액
2017	187	7	31,300,000	52,000,000
2018	239	4	51,300,000	10,000,000
계		11	82,600,000	62,000,000

○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 제보 건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고 건당 평균 포상금액도 560만원 수준으로 현 상한액에(1억원) 비해 낮은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.1)

[표2] [17개 시도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 비교]

시도	구분	경기도를 제외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, 공익신고를 대상으로 교육청 자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음		비 고
		포상금 한도액	포상금 지급 시 금품 향응 수수액 대비 제한	
부산	조례	5천만원	5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대구	조례	5천만원	2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- 별도 규칙
인천	조례	3천만원	2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-별도 조례
광주	조례	2억원	10배 이내	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조례
대전	조례	3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세종	조례	3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울산	조례	5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경기	조례	3억원	10배 이내	
강원	조례	5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충북	조례	3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충남	조례	5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전북	조례	3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전남	조례	5천만원	10배 이내	x
경북	조례	5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경남	조례	3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
제주	규칙	1천만원	10배 이내	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조례
평균		6천 5백만원	11배 이내	

- ※ 위 표에서 “공익신고”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의 공익신고 “부패행위 신고”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
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부패행위 신고임.
- ※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전라남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양자를 별도 조례
와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포상금 자체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.(전 시도교육청이 포
상금 지급 시 금품 . 향응 수수액의 5 ~ 20배로 제한)
- ※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만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.

1) 2017년의 예산대비 초과부분은 2017년에 지급결정이 있는 후 2018년에 지급되었음.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포상금 상한액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[표 2]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평균액(6천 5백만원) 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수, 학생수, 재정규모 등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(3억원)와 비교하여 보면 1/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
 -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공익제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공익제보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한 교육행정의 공정성 향상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의 포상금 상향 조정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3, 2019.2.15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포상금액을 “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(지급한도액 1억원)”에서 “2억원 이내”로 하고,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액을 “1억원 이내”에서 “2억원 이내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】</p> <p>포상금 산정기준(제15조 관련)</p> <p>1.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2 703 775 1137"> <thead> <tr> <th>제보유형(지급대상)</th> <th colspan="2">포상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</td> <td colspan="2">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(지급한도액 1억원)</td> </tr> <tr> <td>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</td> <td>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</td> <td>1억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(지급한도액 1억원)		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1억원 이내	<p>【별표】</p> <p>포상금 산정기준(제15조 관련)</p> <p>1.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0 703 1414 1137"> <thead> <tr> <th>제보유형(지급대상)</th> <th colspan="2">포상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</td> <td colspan="2">2억원 이내</td> </tr> <tr> <td>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</td> <td>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</td> <td>2억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2억원 이내		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2억원 이내
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																
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(지급한도액 1억원)																		
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1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
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																
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2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	
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2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